

제 469-1 호

1974. 11. 28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규 칙

- 제 1414 호 : 서울특별시구출장소사무분장규정중 개정규칙 3
- 제 1415 호 : 서울특별시의회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4
- 제 1417 호 :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 개정규칙 7

◎공 고

- 제 232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지계정지정일부
변경공고 8
- 제 247 호 : 서울특별시상소기업수출품생산자정업계획지정
및위소공고 9
- 제 12 호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공고) : 직인사용공고 10
- 제 291 호 (도봉구청공고) : 청사이전공고 10
- 제 306 호 (도봉구청공고) : 청사이전공고 10

◎사 령 11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규 칙

서울특별시 구출장소 사무분장 규정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

○ 서울특별시규칙제 1414 호

서울특별시구출장소 사무분장규정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구출장소 사무분장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 제 1 항중 "징수제" 및 "징수제강"을 각각 "수납제" 및 "수납장"으로 하고, "세무 2 계" 다음에 "정리계"를, "세무 2 계장" 다음에 "정리계장"을 각각 삽입하며, 동조 제 2 항중 제 1 호와 동항 제 2 호중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상 "시세" 앞에 "세소관"을, 라목상 "시세" 앞에 "원년도"를 각각 삽입하고, 아목을 삭제하고, 동항 제 3 호중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 4 호를 제 5 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 수납제

가. 원년도시세의 징수결과보고

나. 원년도시세의 가산금조정 및 두축결의

다. 시세및 세외수입금의 출납

라. 원년도시세장수부과 소견, 관리집계 및 과정보고

마. 원년도시세의 과오납금결의와 환불 및 증당

바. 시세에 관한 공과금교부청구 및 징수추탁의 송발

사. 원년도시세에 관한 압류제산의 공액환가의 함의

아.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

자. 현금영수원부의 수발과 세무비의 집행 및 장비관리

차. 원년도 징수제납처분에 관한 민원처리와 징수유예

카. 과납 다분제의 추환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세무 1 계

나. 세소관의 원년도시세회납액 대한 제납처분징수추탁과 환납권손보의

라. 계소관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취소, 변경 및 감면

3. 서무 2 계

나. 계소관현년도시세의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징수촉탁과 불납결손 처리

라. 계소관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취소, 변경 및 감면

4. 정리계

가. 과년도체납시세의 징수와 압류 및 징수촉탁

나. 과년도시세징수부의 소인관리, 집계 및 징수보고와 정리상황보고

다. 과년도시세의 과오납금 및 가산금결의

라. 압류재산의 관리와 공매 및 부대업무

마. 과년도시세의 불납결손 처리

바. 소관체납시세에 관한 조세범칙사건의 처리

5. 지적계

가. 지적공부 보관관리 및 정비

나. 토지이동신고 조사 처리

다.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검사

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 발급

마. 무신고이동지조사

바. 지적에 관한 민원사무처리

부 칙

① (시행일) 이규칙은 1974년 11월 2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외의 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 서울특별시규칙제 1435 호

서울특별시의 구의 사무분장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의 구의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 제 1항중 "징수제"를 "수납제"로, 징수제장, 직제제 1제장과 직제제 2제장"을 "수납제장, 직제제 1제장, 직제제 2제장과 정리계장"으로 하고, 직제제 2제" 다음에 "정리제(승로, 승구에 한한다)"를 삽입하며, 동조 제 2항 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 2호(가속증) 및 과년도"를 삭제

합의, 부속 나무종, "과소관" 다
 용의 "현년도"를 삽입하고, 동령
 제 3 호를 제 4 호로 하여 다음부
 같이 하며, 동령 제 3 호를 다음
 부 같이 신설한다.

(2)

1. 수납제

가. 과소관시세의 징수결정과 세입
 금의 징수보고 작성

나. 과소관 현년도시세의 가산금
 및 독송결의

다. 과소관 세입금의 출납

라. 과소관 현년도 시세징수부의
 소인관리와 집계

마. 과소관 현년도 시세의 과오납
 금결의와 환불 및 증당

바. 과소관시세의 공과금 표부청구
 와 징수촉탁처리

사. 과소관 현년도 제남시세에 관
 한 압류재산의 공매환기등에 관한처리

아. 과소관 현금 영수원부의 수불

자. 과소관 세목의 현년도 징수
 및 제 4 처분에 관한 민원처리와
 징수유예

차. 과소관 징세장비의 관리
 카. 과내 다문제의 주관에 속한
 자 아니하길 사항

3. 정리제 (종로; 증구에 한함)

가. 과년도 제남시세의 징수와
 압류 및 징수촉탁

나. 과년도 시세징수부의 소인관
 리, 집계 및 징수보고의 정리
 상황보고

다. 과년도시세의 과오납금 및
 가산금 결의

라. 압류재산의 관리와 공매의
 총괄 및 부대업무

마. 과년도시세의 불납결손처리

바. 소관제남시세에 관한 조세
 방적사건의 처리

4. 지적세

가. 지적공부 보관관리 및 정비

나. 토지이용신고조사처리

다.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검사

라. 토지대장 지적도등본발급

마. 무신고 이중저조사

사. 지적에 관한 민원사무처리

제 8 조 제 1 항중 "징수제, 세무제 1

제와 세무제 2 제 "를 "수납제, 세무제 1 제, 세무제 2 제와, 정리제 (종로, 증구들 제외한다) "로 하고, 동조 제 2 항중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 2 호 가목중 "유용유식세" 앞에 "현년도"를 삽입하고, 동항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 수탁제

- 가. 과소관시세의 징수결정 및 구의 세입금징수보고
- 나. 과소관현년도시세의 가산금조정 및 독촉결의
- 다. 과소관 세입금의 출납 및 세외수입금의 징수 (토목과 및 청소과의 세외수입금 제외)
- 라. 과소관 현년도시세징수부의 소인관리, 집계 및 과정보고
- 마. 과소관현년도시세의 과오납금 결의와 환분 및 총당
- 바. 과소관시세에 관한 공과금 교부청구 및 징수촉탁의 처리와

구종발

사. 과소관현년도 채납시세에 관한 압류재산의 공매환가등의 합의
 아. 과소관현금 영수원부의 수불자, 과소관세목의 현년도징수, 채납처분에 관한 민원처리의 징수유예

차. 과소관정세장비의 관리

카.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

타. 과내다른제의 주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정리제 (종로, 증구들 제외함)

- 가. 과년도회수시세의 징수와 압류 및 징수촉탁
- 나. 과년도시세징수부의 소인관리 집계 및 징수보고의정리상황보고
- 다. 과년도시세의 과오납금 및 가산금합의
- 라. 압류재산의 관리와 공매의 총발 및 부대업무
- 마. 과년도시세의 불납결손 처리
- 바. 소관채납시세에 관한 조세법치 사건의 처리

부 칙

① (시행일) 이규칙은 1974.11.2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 11. 29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서울특별시규칙제 1417 호

서울특별시인사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 5 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규정 제 8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근무평정조정위원
회의 구성은 제 5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고 정계사건만을 의결하기 위
한 인사의원은 따로 임명한다.

제 5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 조의 2 (근무평정조정위원회) 별
조 단서의 근무평정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위원장: 배무국장
2. 부위원장: 인사과장
3. 위 원: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실, 국 주무과장급 5명

4. 간 사: 인사과 고과제장

5. 서 기: 인사과 근무평정담당자

제 76 조 제 1 항 중 "확인자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를 삭제하
고 동조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 본조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제 9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95 조 (근무 및 교육가점) ① 새
마을지도자(구, 출장소의 경우는
새마을지도자) 등 및 시정역점사업
분야에서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 97 조
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에 당해공무원의 경력형성점
의 1 할을 가감하되 가감점수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사제자리에서
산출된다.

② 지방행정연수원에서 6개월의
간부 양성반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 97 조 및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조정시에 3.5점을 가산한다.

(3) 제 1항과 제 2항의 규정에 의
한 가점으로 인하여 가점총점이
10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가
점총점을 10점으로 한다.

(4) 제 1항의 시정역점사업은 승
진후보자명부 작성시에 시장이 따
로 정한다.

제 122 조를 삭제한다.

제 123 조중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항의 후생시설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232 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
예정지지정일부변경 공 고

- 1. 서울특별시 신림추가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 계획을 변
경코져 서울특별시공고제 164 호

(74.9.23)로 공람공고한바 있는
사당동 446 번지 일대 토지에 대
하여 환지예정지지정율 토지구획정
리사업법 제 56 조 및 동법제 57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조서와 같
이 일부 변경하고 이를 공고한다.

2. 환지예정지가 변경지정된 토지의
사용수익은 공고일로부터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
다만, 정지공사미완료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환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토지는 공사완료 및 다
른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사용
수익을 하게한다.

3.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서 및 변경
도면을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국 구
획정리 1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
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첨부 :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서 및
변경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국 구획정리 1과에 비치)

1974.11.6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247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지정및취소공고

이하에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3 조, 제 4 조 및 제 6 조의 규정에

1974.11.28

서울특별시장

1. 지정업체

단위 : \$

지정 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74 수출 목표액
107	상지불산수식회사	박·수	중로구명륜동 4가186-7	합성수지제품	380,000
317	부영천자공업수식회사	최윤용	동대문구송인동 183-13	국 전 기	47,636
611	삼 풍 산 업	김학수	서대문구남가좌동 5-329	엘 범	120,000

2. 지정취소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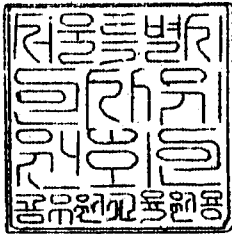
지정 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취소사유
310	동강실업수식회사	전중화	동대문구송인동 313-13	피	부 대 기업으로 전환
1005	유 경 산 업 사	유성우	도봉구미아동 164-5	나이론수사	E. 도 전 출

◎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공고 제 12 호

직인 사용공고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제 1339 호, 74.11.2)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무국 인사과에서 실시해오던 전형업무가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 이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부분) 직인을 다음과 같이 각인하여 74.11부터 사용 개시함을 공고함.

가. 공인인영



- 나. 서체규격: 한글전서체 3.5센티미터 정방형
- 다. 공 인 명: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공무원교육원용)
- 라. 사용일시: 74.11.25.0시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위원장

◎ 도공고제 291 호

청사이전공고

동청사신축에 따라 관하 쌍문동 사무소를 1974.11.24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기 공고함.

다 음

전소재지: 서울특별시도봉구수유동168-5
이전장소: 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361-9

1974.11.26

도봉구청장 김택수

◎ 도공고제 306 호

청사이전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청사신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축청사로 이전하였기 공고함.

다 음

전소재지: 본관 도봉구미아동480-3
별관 도봉구청동734

이전장소: 도봉구 수유동192-59

이전일시: 1974.12.9

1974.12. .

도봉구청장 김택수

사 령

◎1974.11.27

중 구 지방행정
지방행정주사보에 추서함.

장원순

◎1974.11.28

지방의무기정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도봉구보건소장에 보함.

김진의

운수 2 과 지방행정
주사

홍한선

지방공무원법제 65조의 2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
위를 해제함.

◎1974.11.29

성 동 구 지방건축
원
도 봉 구 지방건축
원
영 동 포 구 지방건축
원
관 악 구 지방건축
보
은 영 출 장 소 지방건축
사 보

손대익

최경환

김평원

김공인

정한주

고충진발전단본부 파견근무
(75.1.30 까지)를 면함.

◎1974.12.1

지방보건연구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위생연구소 근무를 면함.

지방보건연구사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위생연구소 근무를 임함.

지방화공기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면함.

지방화공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면함.

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임함.

박홍현

김민영

우찬표

최경희

이숙출

1호봉을 급함.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정기석

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동포구보건의소 근무를 명함.

차유란

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동포병원 근무를 명함.

산화순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

양효숙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지방약무기사

정동연

지방약무기과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약제과장에 보함.

영선과 지방건축기사보시보

양용호

지방건축기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선과 근무를 명함.

영선과 지방건축기사보시보

정재석

지방건축기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선과 근무를 명함.

영선과 지방건축기사보시보

박중기

지방건축기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선과 근무를 명함.

©1974.12.2

구회정리2과 지방토목기원보

김기홍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은명출장소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